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10. 13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달성군에서 세 번째로 운영되는 남부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”명칭 및 위치 신설(안 제2조 제 3호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2. 9. 8.~9. 28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노인복지관(이하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 1. 달성군 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 13 2.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3. <신 설>	제2조(명칭 및 위치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 행 과 같 음) 3. <u>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</u>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6. 2. 3., 2017. 10. 24.>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